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I. UN 글로벌 컴팩트의 반부패원칙 실천방안

1. 개 요

- UN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는 기업이 부패에 대항하고 10번째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실천방안을 제시
 - 대내 방안(Internal) : 처음의 기본 단계로서 조직내부 및 영업활동에 적용할 반부패 방침 및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 대외 방안(External) : 진행중인 반부패활동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보고하고 경험 및 모범 관행을 공유
 - 공동 대응(Collective) : 동종 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대응

* UN Global Compact

< 발족 경위 >

- 1999년 1월 스위스 WEF(World Economic Forum) 총회 연설에서 Kofi Anan UN 사무총장은 『The Global Compact』을 제창하고 세계 경제 지도자들의 동참을 호소
-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범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을 지지하고 채택하여 규범화할 것을 주문

-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원칙 2 : 기업은 인권 학대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다.
- 원칙 3 :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인정한다.
- 원칙 4 :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철폐한다.
- 원칙 5 :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 원칙 6 : 기업은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철폐한다.
- 원칙 7 :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사전주의적인 접근법을 지지한다.
- 원칙 8 : 기업은 더 큰 환경 의무를 장려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 원칙 9 :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원칙 10 : 기업은 뇌물 및 금품 강요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하여야 한다.

- 이후 2000년 7월 UN 본부에서 『The Global Compact』를 발족시킴
- 2006년 1월 현재 세계적으로 2,800여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은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 Eco-Frontier 등 3개 업체에 불과

< 10번째 원칙의 세부 내용 >

원칙 10 : 기업은 뇌물 및 금품강요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해야 한다

□ 원칙의 목표

- 10번째 원칙의 채택은 UN 글로벌 컴팩트 참가자들로 하여금 뇌물수수, 금품강요 및 여타 형태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기업들은 더욱 투명한 글로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UN기구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고려해야 함
-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의 반부패 UN협약의 채택으로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 도구가 마련되었으며, 동 협약은 부패방지를 위한 10번째 원칙의 법적 토대가 됨

□ 부패의 정의

- 부패는 관행적인 수준의 뇌물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를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형태의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남용”으로 정의

□ 금품강요의 의미

- OECD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지침에서는 금품강요를 다음과 같이 정의
 - 뇌물요청은 제3자에게 뇌물공여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뇌물요청이 개인의 청렴성이나 행동에 대한 위협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금품강요가 될 수 있음

□ 뇌물의 정의

-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투명성기구 원칙에서는 뇌물을 기업 경영에 있어 불법, 신뢰훼손, 부정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물, 불법대출, 수수료, 보상 또는 특혜 등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고 정의

2.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

가. 대내 방안(Internal)

(1) 리더십 발휘(Provide leadership)

- 기업 및 대리점들이 부패 관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층이 명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관리자 및 중간경영층에게 엄격한 행동강령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고 동 내용들은 종업원들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개되어야 함

(2) 기업윤리강령 채택(Adopt a company ethics code)

- 많은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제도 외에도 자체적인 경영원칙 및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음
- 경영원칙 및 윤리강령은 조직을 지탱하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번째 원칙은 모든 조직의 반부패 강령의 기반이 됨
- 경영원칙 및 윤리 등 내부강령이나, 국제 투명성기구의 경영원칙 및 UN 글로벌 컴팩트 반부패 원칙 등 외부 지침의 자발적 준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규제를 설정, 강요함으로써 일상적인 법규준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 윤리프로그램에 대한 강령 및 조언은 윤리자원센터(Ethics Resource Center)와 같은 조직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지도는 국제투명성기구나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통해 받을 수 있음

(3) 실행, 통합 및 훈련(Implement, integrate and train)

- 경영원칙 및 윤리강령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내에서 윤리적 문화가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 이러한 경영원칙 및 윤리강령이 여타 경영시스템과 통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직원교육도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짐

(4) 내부 보고 절차 채택(Adopt internal reporting procedures)

- 회사가 반부패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강령을 채택, 실행하도록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담보할 수 없음

- 경영진은 내부보고 메커니즘 등과 같은 적절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는 바, 적절한 보고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는 계속될 것임
- 내부보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의사소통(Communication) : 프로그램은 모든 종업원에게 알려져야 함
 - 접근성(Accessibility) : 조직전반에서 프로그램이 이용가능해야 함
 -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 : 회사 고유의 문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함
 - 개방성(Openness) : 보고시스템은 공급업자, 컨설턴트 및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선별(Screening) : 사소하거나 악의적인 보고를 제거
 - 자료수집(Collect data) : 보고를 모니터하고 동 데이터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추적하여 약점을 파악해야 함
 - 시정조치 및 피드백(Remedial action and feedback) :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
 - 경영투명성(Management visibility) : 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담당자에게 보고
 - 종업원 보호(Employee protection) : 신고 종업원 보호
 - 외부 보고(External communication) : 주주 및 여타 이해당사자 등에 취해진 조치 및 성취 결과를 보고

< 참 고 >

국제 투명성기구의 6단계 실행 절차

- ◇ 국제투명성기구는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원칙(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을 토대로 한 6단계의 실행절차를 개발하였으며 동 절차는 기업들의 반부패 방침의 개발 및 실행에 도움이 됨
 - 6단계 실행절차는 기업의 규모나 능력 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1단계]

- ◇ 조치내용 : 뇌물 방지정책 채택 결정(Decide to adopt a no bribes policy)
- ◇ 주책임자 : 사업주, 이사회, CEO
- ◇ 절 차 :
 - 최고경영층으로부터 뇌물방지 방침을 위임 받음
 - 뇌물방지 프로그램 실행 결정
 - 상위관리자 및 프로젝트 수행 팀 임명
- ◇ 실시기간 : 1개월

[2단계]

- ◇ 조치내용 : 실행계획 수립(Plan implementation)
- ◇ 주책임자 : 지명된 상위 관리자 및 프로젝트 팀
- ◇ 절 차 :
 - 회사 고유의 위험을 확인하고 현재의 관행을 평가
 - 모든 법적 필요사항을 평가
 - 정보공개 정도를 결정
 - 뇌물방지 프로그램 작성 및 개발
 - 상위관리자,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서약서 확보 및 시범실시
- ◇ 실시기간 : 3~6개월

[3단계]

◇ 조치내용 : 뇌물방지 프로그램 개발(Develop anti-birbery programme)

◇ 주책임자 : 지명된 상위 관리자, 부서장

◇ 절 차 :

- 조직내부에 뇌물방지 방침을 마련하고 책임을 부여
- 새로운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의 능력을 평가
- 인사관리 및 연수프로그램 등 세부실행계획 개발
- 고충처리 기능 마련
- 부수적인 상황에 대한 준비

◇ 실시기간 : 3~6개월

[4단계]

◇ 조치내용 : 프로그램 실행(Implement programme)

◇ 주책임자 : 지명된 상위 관리자, 일선관리자, 지원부서, 사업파트너 등

◇ 절 차 :

- 뇌물방지 프로그램 전달(대내 및 대외)
- 종업원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연수과정 운영
- 내부감사, 재무, 법무담당 부서의 직무능력 강화
- 사고 처리
- 기타 부수적인 상황 처리
- 프로젝트 팀의 기능 점검

◇ 실시기간 : 1년

[5단계]

◇ 조치내용 : 감시(Monitor)

◇ 주책임자 : 윤리/컴플라이언스 간부, 내부/외부 감사

◇ 절 차 :

-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사소한 사고를 통한 상황과악
- 외부 정보제공자 이용
- 고충채널에 대한 점검

◇ 실시기간 : 계속 실시

[6단계]

- ◇ 조치내용 : 성과평가(Evaluate performance)
- ◇ 주책임자 : 사업주, 이사회, CEO, 감사위원회
- ◇ 절차 :
 -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 프로그램 개선점 발굴
 - 경영진에 대한 보고
 - 이사회 심사 및 프로그램 종료
 - 프로그램 절차 및 결과 발간(선택 사항)
- ◇ 실시기간 : 연 1회 이상

나. 대외 방안(External)

(1)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함(B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 회사의 부패개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들이 회사내 모든 거래가 신뢰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경영진은 투명한 기업 문화를 배양함으로써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열린 조직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음

▷ 반부패 업무 내용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 보고되어야 함

- 경영진은 『UN 글로벌 컴팩트』 9가지 다른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10번째 원칙에 대한 실시 상황을 다음 사항에 입각하여 기술, 보고

(i) 반부패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

(ii) 실행중인 방침, 프로그램 및 시스템(ICC 행동강령, 국제투명성기구 기업경영 원칙과 같은 반부패 방침 등)

- (iii) 실제 취해진 조치들(예: 종업원 교육, 공급업자에 대한 의사소통, 대리점 관리, 단체행동 참여 등)
- (iv) 10번째 원칙의 실행 결과 및 영향(조사된 사건의 수, 윤리교육을 받은 종업원 수 등)
- o UN 글로벌 컴팩트는 결과 보고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2) 모범사례 공유(Share good practices)

- o UN 글로벌 컴팩트는 국제 투명성 기구나 국제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구들의 협조하에 기업들의 심사를 통해 발표되는 모범사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다. 공동 대응(Collective)

(1) 공동 대응 조치(Take collective business action)

- o 지역 사업체 리더가 모든 형태의 부패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음
- o 사소한 뇌물에서부터 소위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s)와 같은 큰 규모의 부패 등과 같은 행위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문화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
- o 비록 기업 관리자들이 이러한 부패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음
- o 이러한 경우에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간에 공정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공동 대응(collective action)이 주요 해결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실제로 기업관리자들도 만약 부패관행이 사라진다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경쟁 기업들에게 뒤쳐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별기업들이 부패와 싸우기 위한 첫 단계를 밟기 어려운바, 특정 목적을 가진 중개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부패 공동대응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립적인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음

(2) 공동대응 사례(Examples of collective action)

- ▷ Integrity Pact(IP) :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전시킨 강령으로서 공공부문 조달 관련 부패를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Web Site] www.transparency.org/integrity_pact/preventing

-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EITI) :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토니블레이 영국수상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기업들의 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급 결제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Web Site] <http://www.eitrancparency.org>

- ▷ Publish What You Pay : 석유, 가스, 광물추출을 통해 이들 회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200개의 비영리 연합체로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정부가 천연자원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데 있음

[Web Site] <http://www.publishwhatyoupay.org/>

- ▷ Convention on Business Integrity(CBI)-Nigeria : 1997년 나이지리아에서 몇몇 기업리더들이 민간 및 공공부문 부패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한 비정부 조직

[Web Site] <http://www.theconvention.org>

II.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 지배구조 강화 원칙*

* *Enhancing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ing Organisations*

(제정 경위)

-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99년 9월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강화에 필요한 은행 및 감독당국의 지침을 공표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75년 BIS(스위스 바젤 소재) 산하의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G-10(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 등 13개국)의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당국 대표로 구성

- 동 지침은 1) 은행의 목표 및 가치, 2) 책임 한계의 명확화, 3) 이사의 자질 및 역할, 4) 관리자의 감독 보장, 5) 내·외부 감사 기능, 6) 은행의 가치·전략 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7) 투명경영 등에 대한 실무 지침(practices) 형태로 제시

- 그 이후 2004년 5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원칙(principles) 형태의 새로운 지침을 2006년 2월 공표

*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의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www.kicac.go.kr>)에 게시된 『기업윤리 브리프스』(2006-3호)를 참조 바람

-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강화 관련 7개의 실무지침을 8개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이사회와 상위관리자의 역할, 은행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책임 등을 강조
- 은행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한 6개의 새로운 원칙 제정 등

(원칙의 내용)

I. 건전한 지배구조 원칙(*Sound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 원칙 1 >

이사는 직책에 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지배구조상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 업무에 관하여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함

- 은행은 경영진의 견해, 정치적 이해, 또는 부적절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
- 이사회는 은행이나 주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의한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 바젤위원회는 이사회가 감시와 경영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조언을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용하며,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대형 은행의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급의 조직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원칙 2 >

이사회는 은행조직 전반에 공유되어 있는 은행의 전략적 목표와 기업 가치를 승인하고 감독해야 함

- 이사회는 상위관리직이 전문가로서의 행동과 성실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적 정책과 절차를 실행하고, 지배구조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해상충, 내부대출, 특정인에 대한 우대조치 등과 같은 관계나 행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법, 비윤리적 또는 의심스러운 행위는 은행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신고한 직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수시로 직접 또는 간접적(독립적인 감사, 옴부즈만 등을 통해)으로 보고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해야 함

< 원칙 3 >

이사회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책임(responsibility)과 설명책임(accountability)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집행해야 함

- 이사회는 건전한 지배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s)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진의 행동이 이사회와 일관성이 있는 지 여부를 감시할 책임이 있음
- 은행이 중요한 기능을 외주(outsource)할 경우에도 이사와 상위관리직의 설명책임은 외주기업에게 전가될 수 없음

< 원칙 4 >

이사회는 상위관리자가 이사회와 방침을 따르면서 적절히 감독하도록 해야 함

- 상위관리자란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나 각 부서의 장 등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소속직원에게 대해 적절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원칙 5 >

이사회와 상위관리자는 내부감사기능, 외부감사인 및 내부통제기능이 수행한 업무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 이사회와 상위관리자는 리스크관리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내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감사기능의 유효성을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은행은 지배구조 관련규칙, 규제, 규범 및 방침의 준수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효한 준법감시기능은 물론 건전한 내부통제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관리자 또는 필요하다면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칙 6 >

이사회는 보상에 관한 방침(policies)과 실무지침(practices)은 은행의 기업문화, 장기목표 및 전략, 통제환경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이사회는 소정의 방침에 따라 이사 및 상위관리자의 보수를 결정 또는 승인해야 하며, 그 보수가 은행의 문화, 장기 목표 또는 전략, 통제환경을 반영해야 함
- 이어나 상위관리자에 대해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장기적인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객관적인 조건하에서 보수를 결정해야 함

< 원칙 7 >

은행은 투명한 방식으로 경영되어야 함

- 은행은 웹사이트, 연차보고 등과 같은 정기보고,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로 이사회,의 구조, 기본적인 소유구조, 조직구조 등을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요구됨

< 원칙 8 >

이사와 상위관리자는 투명성을 저해하는 관할지역, 구조 등을 포함한 은행의 전반적 운영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이사회와 상위관리직은 핵심은행업무뿐 아니라 투명성이 낮은 관할지역 또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활동도 내부통제 검증의 대상에 포함시켜 자신들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이사회는 은행이 투명성이 낮고 감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관할지역에서 또는 복잡한 구조를 통해 업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업점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due diligence)를 행해야 함

II. 감독당국의 역할 (*The Role of Supervisors*)

< 원칙 1 >

감독당국은 은행이 갖추어야 할 건전한 지배구조와 능동적 실무지침 (pro-active practices)에 관한 지도지침을 은행에 제공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의 규모, 복잡성, 구조 및 리스크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구조에 대해 은행들이 상이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감독 프로세스는 은행의 지배구조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원칙 2 >

감독당국은 지배구조를 예금자 보호의 한 요소로서 간주해야 함

- 건전한 지배구조에서는 주주의 이익 뿐만 아니라 예금자의 이익도 중시되며 감독당국은 개별 은행이 예금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평가해야 함

< 원칙 3 >

감독당국은 은행이 지배구조에 관한 건전한 방침 및 관행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감시할 때 지배구조가 은행의 리스크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감독당국은 은행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갖춘 조직구조를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규제상의 지침은 설명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이사 및 관리직 후보자의 전문능력과 성실성(integrity)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적격성(fit and proper) 심사기준에는 ① 해당 후보자의 능력이나 경험이 은행의 안전과 건전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지, ②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해당 후보자가 은행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경력이나 행정처분의 경험에 있는 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감독당국은 이사회 및 상위관리자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함

< 원칙 4 >

감독당국은 은행의 감사 및 통제 기능의 수준을 평가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내에 이사회와 상위관리자의 감시책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메커니즘(내부 및 외부감사, 리스크관리, 준법감시기능 등)이 존재하는 지를 평가해야 함

< 원칙 5 >

감독당국은 은행이 속한 그룹의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이 속해 있는 그룹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함
- 감독당국은 중대한 모든 리스크와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에서 모회사의 이사회로, 그리고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은행으로 적절한 내부보고 및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칙 6 >

감독당국은 감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이 충분히 측정 또는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및 상위관리자에게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적시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함

III.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한 지원적 환경 조성(*Promoting an Environment Supportive of Sound Corporate Governance*)

-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에 대한 주책임은 이사회 및 상위 관리직에 있으며, 감독당국은 지침을 개발하고 은행의 지배구조 실무지침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그 외에도 건전한 지배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
 - 주주 : 주주의 권리를 능동적이고 잘 행사
 - 예금자 등 고객 : 비건전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은행과는 거래 금지
 - 감사인 : 감사인의 전문능력과 감사기준을 갖추고 이사회, 고위관리자 및 감독당국과 수시 의견 교환
 - 은행업 협회 : 업계 자발적인 원칙 제정과 건전 관행에 대한 합의 및 책자 발간
 - 리스크 관리 및 자문회사 : 건전 지배구조 관행의 이행을 지원
 - 정부 : 법규 및 사법체계의 정비
 - 외부평가기관 : 지배구조가 은행의 위험특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증권감독당국, 증권거래소 등 : 지배구조 관련사항의 공시
 - 종업원 : 불법 또는 비윤리적 관행 및 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에 관한 의견 교환

III. 국내 기업의 기업윤리 동향

□ LG전자의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2006. 4. 20일 LG전자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송부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

《 LG와 정도경영 》

- ◎ LG의 정도경영¹⁾은, 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존중의 경영』을 실천하는 LG고유의 행동방식임. LG의 행동방식인 정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일등 LG”의 비전을 달성하자는 의미에서 LG WAY를 선포함



1) 정도경영이란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꾸준히 실력을 배양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LG만의 행동 방식을 지칭함

《 정도경영 추진실적 》

◎ LG 정도경영 연혁

- 1993년 불공정사례신고센터 운영
- 1994년 LG윤리규범 선포
- 1995년 ‘정도경영’을 통한 초우량LG 선언
- 2003년 정도경영TFT²⁾ 발족
- 2005년 투명경영대상 수상
 - 경제 5단체장이 주관하는 제1회 투명경영대상 수상
 - 국가청렴위원회 주최 민간분야 윤리경영 우수사례 청와대 발표

◎ 정도경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

- 경영진의 정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 『정도경영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분명한 원칙과 『회사돈을 횡령하는 사람보다 경영 데이터를 왜곡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본다. 잘못된 데이터가 몇 년 가다 보면 회사가 망한다』는 투명경영에 대한 CEO의 확고한 의지표명
- 기본준수 문화의 정착
 - Business Process Map을 도입, 주요 업무·절차의 통제 기능 강화 등 기본준수 문화 정착
 - 결산 Process의 표준화·자동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 향상 및 투명성 제고

2)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자회사별 책임경영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회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지원 및 소액주주, 대리주주를 위한 주주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예방활동의 강화

- o 경영자와 실무자가 기업 경영상 존재하는 위험과 내부통제 상황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활동(CSA : Control Self Assessment) 수행
- o 조직內 부정비리의 조기 발견 및 부정징후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도(RMS : Risk Monitoring System) 운영
 - RMS tool을 이용하여 부정 징후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경우, 조기 경보로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既 발생한 부패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 '04년 구매,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Pilot Project를 수행하였고, '06년 구매분야 실제 수행, 전 분야로 확대 예정

— 전문적인 경영진단(내부감사) 수행조직 구축

- o 전문 경영진단인이 해당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진단하며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조직을 기능별로 조직화함

— 윤리경영 전담조직 설치



— LG 윤리규범 제정 및 시행

- o 2004년부터 (주)LG 공통으로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 해설서」를 작성하여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정도경영 실천 행동방향 제시

— 정도경영 홈페이지 운영

- o 정도경영 홈페이지 내 On-line 상담실과 윤리사무국 상담 전화를 운영하여 윤리규범의 모호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정도경영 관련 의문·불만 사항을 해결

— 제보시스템 운영

- o 사내/외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문고 제도 운영, 유선 Hot-line 및 메일을 통한 윤리규범 위반 사항 접수
- o 제보자 신분 노출 방지 및 불이익 금지 등 제보자 보호 철저

— 자진신고 제도 운영

- o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협력업체의 주식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상장·비상장 주식을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경우 윤리사무국에 자진 신고하고 즉시 정리케 함
- o 명절이나 진급 시 수수한 금품·선물을 윤리사무국 및 정도경영 홈페이지에 자진 신고케하여 대상물품을 회송하도록 함

— 정도경영 교육

- o 임원, 조직책임자, 관리담당, 해외법인 파견자, 진급자 및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상시 집합교육 실시
- o 신입직원대상 'On-line 정도경영 실천과정' 사이버교육 운영(연 1회 필수교육)
- o 협력회사 대표이사들과 '정도경영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실시
- o 전직원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징구

— 정도경영 홍보

- o 정도경영 표어 제작 및 포스터 공모
- o 진단 종료 후 Project Leader가 사례화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홍보

- 사내게시판과 정도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규범 Quiz Event 실시
- 정도경영과 관련된 신문·인터넷 기사를 링크하여 정도경영 홈페이지와 사내 게시판에 홍보
- 부정비리 관련자에 대한 사실왜곡 및 유사 부정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처리가 확정된 후 그 사실을 임직원에게 공지

— 정도경영 Survey 실시

- 임직원들의 정도경영 관련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을 위해 소임직원, 협력회사 대상으로 매년 실시

◎ 사회공헌 활동

- 전사공통으로 임원 사회공헌기금 운영, 소년소녀 가장돕기, 수해복구, 헌혈 캠페인, ‘아름다운 가게’ 참여, 밥퍼 자원봉사 등 실시
- 사업장별로 무의탁 노인 무료급식, 자선음악회, 문화교육 지원, 연구 개발 지원, 불우어린이 후원

◎ 환경경영활동

- 사회적, 자원적, 생태계적 측면에서 환경안전 경영활동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환경안전 활동 계획을 선정·추진
 - 자원절약·재활용 극대화, 친환경제품 개발로 환경영향 최소화, 설비공정의 환경성·위험성 검토,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 지속가능경영 체계구축 및 성과관리
 - “CSM(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Task” 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2006년 9월 발간 예정)등 주요과제를 추진중
 - CSM 전략체계 및 세부 추진 Roadmap 수립
 - 지속가능경영의 사내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IV. 국내 윤리경영 소식

【 기업 관련 】

◎ GS건설, 부조리와 비리 등 비윤리 행위를 신고하는 협력업체를 우수협력사로 선정('06.4.4)

— 공사 하도급 받주나 자재 구매와 관련된 입찰과정상의 비리를 없애고 협력업체와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

◎ 교보생명, 직무청렴계약제 도입('06.4.6)

— 동 제도는 임원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면 면직은 물론 형사상 책임과 계약 이후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는 제도로 민간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 전경련, 대기업 윤리경영 실태 조사 결과 발표('06.4.7)

— 대기업 회원사 및 매출액 기준 5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리경영 실태 조사(응답회사 194개사) 결과를 발표

○ 윤리헌장 또는 강령을 도입한 업체는 84.1%로 지난해 조사 당시에 비해 22.1% 포인트 증가

○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업체는 39.6%,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둔 업체는 53.1% 등

◎ 이마트, '이마트 윤리경영 우수기업 선정제품' 부착 ('06.4.7)

— 우수 협력업체 제품에 마크 부여 등 윤리경영 전도 앞장

— 지난 2004년부터 ‘협력회사 윤리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윤리경영 매뉴얼과 강령 제정에 도움을 주는 등 중소협력업체를 지원

o 매년 1회 이상 협력업체와 ‘윤리경영 도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총 12개 항목에 걸쳐 협력업체의 윤리경영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

◎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 확산 나서('06.4.12)

— 기업윤리경영 운동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삼고 적극 추진

o 이를 위해 조사본부에 윤리경영팀을 신설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윤리경영 인식 강화 교육과 실태조사, 모범사례 개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

◎ 철도공사 ‘사랑의 집 고치기’ 동참('06.4.19)

— 한국철도공사는 한국해비타트와 ‘레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협약식 체결

—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올해 5월부터 전국 4개 지역 20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

◎ 웅진, ‘글로벌 환경기업’을 추구하는 환경경영 선포('06.4.25)

— 웅진그룹은 환경경영 선포식을 갖고 ‘뉴 그린(new green) 경영을 통한 글로벌 리더 기업 도약’을 선언

o 글로벌 환경기업으로의 도약, 청정 생산을 통한 친환경 시스템화, 환경 흐름에 능동적인 대응, 지속적인 환경 개선 투자, 웅진 식구의 또또사랑 환경사랑 마인드 강화 등 5개항의 경영 방침을 확정

【 정부 관련 】

◎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06.4.13)

- 산업자원부는 기업 스스로 지속가능경영 실천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SYSA)'를 개발
 - 동 지표는 사회책임, 지배구조,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9개 영역 10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지속가능경영 정착 단계(AA)'에서부터 '지속가능경영 인식부족(D)'까지 7가지 등급으로 구분
 - 지난 3월 산자부가 이 지표를 근거로 포스코를 비롯한 9개 국내 대표기업들을 시범평가한 결과, 대체로 중간 수준인 지속가능경영 확산 초기단계(B)~지속가능경영 도입단계(CC) 등급에 걸쳐 분포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전용계좌제도와 대출금 사용내역서 제출제도 도입('06.4.19)

-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3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건당 50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4월에 신청한 정책자금부터 적용
-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유형을 사적 유용, 특수관계자 대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상환, 비영업용 자산 취득 등으로 분류하고 정책자금 건전화를 위한 사후점검 때 이를 확인할 방침
-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3년간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위반시 제재조치 방안도 마련